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미간행]

판 시 사 항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 조 조 문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1항, 제356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12991 판결

참 조 판 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공2004상, 3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었는데, 위 피담보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7. 6. 5.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변제를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 승인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